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 된다. 프라이버시는 비밀성, 익명성, 고립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크레이그와 루드로프에 따르면 프라이버시는 신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 조직 프라이버시로 구분된다. 신체 프라이버시는 신체적으로 불법조사를 받거나 집이 감시받지 않고 소유물을 압수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본인의 디지털 정보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수집, 저장, 공유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이 변하면서 정보적 프라이버시는 기존의 권리에 개인의 대화, 행동, 위치정보 등에서 익명성을 유지할 권리가 더해져서 정의된다. 스피넬로는 정보 프라이버시를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그리고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권리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차단하거나 허용할수 있는 일종의 통제권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조직 프라이버시는 정부기관, 기업 등이 거래비밀 등 자신의 활동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되는 기본법이다. 유엔 세계 인권선언 제12조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전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사상, 종교, 신념, 질병정보, 재산상황, 범죄경력 등이 프라이버시에 속하지만 식별할 수 있으며, 공개되는 이름, 직장 등의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에 속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는 시대, 지역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독재국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글이나 영상이 프라이버시가 되고, 병력/사고전력은 구직자/보험가입자에게 프라이버시가 된다.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침해되지 않는 권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점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잊혀질 권리로 확대 되고 있다.